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2월 1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경제국장 한만석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수익 발생 시설물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의 해지 근거, 수익금의 처리 및 정산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 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(안 제26조제3항)
-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정비(안 제31조제2항)
- 위탁시설의 위탁계약 해지 근거 규정 신설(안 제35조의2 신설)
 - 1)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는 경우

- 2)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- 3)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4) 그밖에 계속 위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물 위탁계약 해지 가능
- 위탁시설 수익금 사용 및 처리 규정 신설(안 제37조의2 신설)
 - 1) 수탁자의 수익금 사용 용도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제한
 - 2) 위탁관계 단절 시 발생하는 잔여 수익금은 구 세입으로 처리
- 위탁시설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 의무 신설(안 제37조의3 신설)
- 수탁자는 3개월마다 수익금 지출사항 상세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
- 수익발생 시설의 상인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 정산, 지도감독 및 계약 해지 등 근거를 구축하고
-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과 수탁관계 단절시 수익금 귀속 방법을 신설하고 위탁시설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명시한 것임.
- 현재 우리구 전통시장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은 주차장이 유일하고,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관리는 「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24호)」 제24조(주차장 시설 위탁운영)에 따라 시행

중으로

- 조례개정안 내용이 운영지침, 협약 등으로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지만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안건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